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12.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아시아나항공(주)의 계열 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및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 위에 대한 건 (2000유거0700)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는 1999. 4. 26. 자신의 계열회사 인 아시아나트래블포탈(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1999. 9. 28.부터 2000. 4. 20.까지 자신의 항공권예약 주전산시스템 기능을 일방적으로 조작하여 토포스여행정보(주)의 단말기 화면에만 자신의 국제선 항공권의 일반 석 예약등급을 삭제하고 허위 예약정보를 제공하여 토포스여행정보(주) 및 항공권 판매대리점들이 토포스여행정보(주)의 컴퓨터예약시스템인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를 통한 자신의 국제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1999. 10. 7. 토포스여행정보(주) 및 300여개 항공권 판매대리점에 토포스여행정보(주)의 CRS를 이용한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토포스여행정보(주)의 CRS를 이용하는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 함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위반	◎ 비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취 급 및 타사업자 사업활동방 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

2000. 12. 1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규모기업집단 「새한」 소 속 (주)새한의 신규채무보 증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 한 건 (2000기업1146)	주식회사 새한은 1998. 4. 1.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이 금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열회사인 새한미디어(주)가 1999. 8월 중순경 삼성캐피탈(주)와 운영자금 250억원 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한미디어(주) 총주공 장 기계설비 및 화재보험청구권, 새한미디어(주) 발행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별 도로 (주)새한이 발행한 백지어음을 추가담보로 제공할 것을 구두로 약속함에 따라 새한미디어(주)가 자신에게 동 대출건에 대한 보증용 백지건질어음을 발행해 줄 것 을 공문으로 요청하자, 1999. 8. 26. 이사회를 거쳐 보증 용 백지어음 및 보증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발 행·전달하였으며, 자신의 계열회사인 새한건설(주)가 신한은행 삼성중앙지점과 5억원을 한도금액으로 하는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999. 8. 13. 자신에게 동 계약에 필요한 보증용 백지건질어음을 발행해 줄 것	◎ 신규채무보증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 령  ◎ 과징금 납부 : 148,700천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을 공문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보증용 백지 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위반	
대규모기업집단 「동부」 소속 동부제강(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업1222)	동부제강주식회사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동부건설(주)가 자신의 주식 4,564,162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 2. 1. 동부건설(주)와 동부고속(주)의 합병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동부고속(주)의 주식 911,681주가 동부건설(주)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부건설(주)의 주식 3,075,191주를 보유하게 되어 동부건설(주)와 상호출자를 하게 된 바,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 상호출자를 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소유예기간이 종료된 2000. 7. 31까지 이를 해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9조제2항 위반	◎ 동부건설(주)와의 상호출자를 2001. 6. 30.까지 해소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239,000천원

2000. 12.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5개 편의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197)	(주)엘지유통, (주)보광훼미리마트, 대한유통(주), 동양마트(주), (주)한유통의 실무책임자는 1994. 2. 15. (사)한국편의점협회 회의실에서 2000. 11월 현재 소멸된 (주)AM·PM코리아 및 태인유통(주)의 실무자들과 만나 서로 기존의 점포에 인접하여 신규점포를 개설하지 않기 위한 실시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994. 4. 7. 동 회의실에서 (주)엘지유통, (주)보광, 미원통상(주), (주)씨클 K코리아, (주)AM·PM코리아, 태인유통(주)의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직선거리 80m 이내에 근접출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결의하고, 1994. 4. 7. "근접거리출점방지를 위한 합의사항 운영지침" 을 제정·시행, 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 9. 25.까지 7여년간 운영하는 등 신규점포의 개설지역을 제한하여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코리아세븐주식회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2000유거0571)	코리아세븐(주)는 순수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순수가맹점이 임의로 가격을 변동시킨 경우 자신의 시정지시를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하였으며, 계약서상에 순수가맹점에게 매월 결산하여 판매장려금과 매입할인금을	◎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 등을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해당 계약서 조항을 지체없이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주도록 약정한 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순수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상품발주 내용을 취합하여 이를 제조업체에 일괄 발주하고 구매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상품구매액의 3~10%에 해당하는 1,260백만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말 현재까지 순수가맹점에게 판매장려금에 대해 결산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순수가맹점 및 위탁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3년 이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200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약정·시행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위반</p>	<p>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순수가맹점과 가맹계약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2000. 12. 2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주)제너시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059)</p>	<p>주식회사 제너시스는 자신의 가맹점에게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00. 7. 1.부터 8. 1.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치킨과 함께 양배추 샐러드를 가맹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으로부터만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하였으며, 7. 5.부터 8. 20.까지 2차례에 걸쳐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과 사전 협의없이 일부 광고전단지의 비용을 전액 가맹점에게 부담시켰고, 가맹점에게 양배추 샐러드를 유료로 판매하면서 가맹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치킨 1마리를 구입하면 양배추 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2000. 8. 1.부터 텔레비전, 광고전단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광고함과 동시에 7. 20.부터 "치킨 1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 무료 증정"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박스 및 비닐봉투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가맹점으로 하여금 양배추 샐러드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하여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였으며, 이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하여 동 문구가 인쇄되지 않은 박스를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동 가맹점이 별도로 주문·제작된 배달용 치킨박스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물류중단이나 계약해지를 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및 제1호 위반</p>	<p>◎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60,000천원</p>

2000. 12.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코오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1169)	주식회사 코오롱은 2000. 6. 19.부터 9. 21.까지 중앙일보 등 9개 일간지와 여성동아 등 4개 월간지 등에 자신이 판매하는 코오롱생수기에 대해 광고하면서 "2년 렌탈비용이면 100만원이 넘는 정수기?"라는 소재목하에 "비쌀 이유가 없는 정수기를 터무니 없는 200만원대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초기구입비용 때문에 렌탈해서 사용하는 서민에게는 판매용과는 품질이 다른 정수기를 공급하는 정수기 -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판매 1등 정수기보다도 신뢰 1등 생수기!"라는 소재목하에 "역삼투압 정수기 1년 비용이면 장만할 수 있는 코오롱생수기 - 가장 많이 팔기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생수기로 소비자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라고 표기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대한법무사협회의 표시·광고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소기1159)	사단법인 대한법무사협회는 자신이 1962. 11. 12에 제정한 법무사윤리장전 제6조에 법령의 근거도 없이 "법무사는 법령, 공직 또는 회칙에 사용된 명칭 이외의 전력, 기타 선전적인 사항을 명함, 간판 등에 기재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 위반	◎ 표시·광고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회원과 모든 법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0. 12. 2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교보문고 등 대형 서적판매 3사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335)	(주)교보문고, (주)영풍문고, 종로서적(주)는 수험서적 전문서점인 6서당이 멤버십 회원들에게 수험서적을 정가의 5~10% 할인판매함에 따라 자신들의 매장에서 수험서적을 정가로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서적반품 및 할인요구 등의 항의를 받는 등 수험서적의 매출이 떨어지자, 자신들과 6서당에게 각종 수험서적을 공급하고 있는 도서출판고시학회21 등 13개 출판사들에게 1999. 12. 17.부터 2000. 2. 28.까지 5차례에 걸쳐 6서당의 수험서적 할인판매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동으로 출판사들의 수험서적을 매장의 진열에서 제외시키고, 반품 및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6서당의 수험서적 할인판매행위를 중단시키도록 강요하였고, 6서당이 이에 불응하자 도서출판고시학회21 등 4개 출판사들이 2000. 2. 27.부터 3. 17.까지 6서당에 대한 서적공급을 중단하여 6서당이 3. 18. 할인판매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등 6서당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각각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